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1731

제출연월일: 2021. 4. 30.

제 출 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가.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명시한 「평생교육법」에 부합하기 위해 제명을 변경하여 급변하는 지식정보화시대, 전구민이 평생학습에서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.
- 나. 여러 차례 개정된 법령 주요내용을 반영하며,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현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주민주도의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명 변경
 - 「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」
- 나. 용어 정의 신설
 - '평생교육기관', '평생학습센터', '평생학습 자원활동가' 용어정의 신설(안 제2조제2호, 제4호, 제5호)

다. 조문 신설

- 평생교육의 진흥 조문 신설(안 제3조)
- 평생교육 진흥사업 민간위탁 조문 신설(안 제4조)

- 평생학습 자원활동가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문 신설(안 제17조)
- 라. 구체화
 - 평생교육 진흥사업 구체적 명시(안 제4조)
 -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위촉대상자 명확·구체화(안 제7조)
- 3. 근거법규: 따로 붙임
 - 「평생교육법」
- 4. 전부개정조례안: 따로 붙임
- 5. 참고사항
 - 가. 예산조치 사항: 해당사항 없음
 - 나. 규제사무 심의: 해당사항 없음
 - 다. 성별영향 평가: 개선사항 없음[여성가족과-12715호(2021. 3. 25.)]
 - 라. 입법예고: 2021. 3. 29. ~ 4. 19.(21일간) / 의견없음
 - 마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평생교육"이란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, 성인 문자해득 교육, 직업능력 향상교육, 인문교양교육, 문화예술교육,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.
- 2. "평생교육기관"이란「평생교육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에 따라 인가· 등록·신고 되었거나,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 으로 하는 시설·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- 3. "평생학습관"이란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(이하 "구"라 한다)가 설치 또는 지정·운영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.
- 4. "평생학습센터"란 주민들의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내에 설치·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.

- 5. "평생학습 자원활동가"란 자발적으로 평생학습 활동에 참여하여 주민들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.
- 제3조(평생교육 진흥)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법 제5조에 따라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·추진해야 한다.
 - ② 구청장은 구 소관에 속하는 단체·시설·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 실시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.
- 제4조(경비지원 및 위탁)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 - 1.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
 - 2. 장애인, 노인, 다문화 등 소외계층 대상 교육
 - 3. 지역, 마을, 동아리 단위의 학습공동체 조성 및 운영
 - 4.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의 평생교육 협력 및 연계사업
 - 5.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·조사 및 평가를 위한 사업
 - 6. 그 밖에 구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-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 기관·단체 ·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민간위탁 할수 있다.

제2장 평생교육협의회

- 제5조(평생교육협의회)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- 제6조(협의회 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 및 구청장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.
 - 1.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 - 2. 평생교육진흥시책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 - 3. 평생교육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
- 제7조(협의회 구성)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며,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 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21조에 따른다.
 - 1.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
 - 2. 평생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
 - 3. 평생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
 - 4. 관할 교육지원청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
 - 5. 주민자치국장
 - 6.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- 제8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- 다만, 공무원, 구의원 및 기관·단체의 장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 -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9조(해촉)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 - 1. 위원이 사퇴하거나 질병, 해외여행 등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 - 2. 직무태만,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
 - 3.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- 제10조(의장의 직무)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11조(협의회 운영) ① 의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.
 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③ 의장은 회의에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 -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- 8 (제235회-행정자치위제3차부록)
- 제12조(간사와 서기)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, 간사는 협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로한다.

제3장 평생학습관

- 제13조(평생학습관)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구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울산 광역시 중구 평생학습관(이하 "평생학습관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.
 - ③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관 중심으로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제14조(평생학습관 기능)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- 1.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
 - 2.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
 - 3. 평생교육 종사자 연수·교육
 - 4. 평생교육 관련 기관·단체 및 시설의 연계·지원
 - 5.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·제공
 - 6.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·관리
 - 7.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
 - 8. 평생학습 동아리 구성 및 활동 지원

- 9.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 또는 문자 해득 교육 지원
- 10. 그 밖에 구청장이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(평생학습관 운영) ①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운영·관리한다.
 - ② 평생학습관의 위치 및 운영의 절차,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16조(위탁운영)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사업과 관련 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」에 따른다.
- 제17조(평생학습 자원활동가 양성 및 지원)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평생학습 자원활동가를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평생학습 자원활동가에게는 「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8조(운영요원 등)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,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 - ② 관장은 평생학습관을 대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하며, 평생교육 담당부서장이 관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 - ③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 한다.
- 제19조(평생교육 수료자 예우) 구청장은 구 주관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을 수료 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, 우수 수료자는 표창할 수 있다.
- 제20조(수강료 징수 등)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하거나 반환할 수 있다. 다만,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- 10 (제235회-행정자치위제3차부록)
 -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와 교육자치 지원사업으로 필요한 경우 수강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수강료의 기준 및 감면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2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 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운영 중인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 관련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.

근 거 법 규

□ 「평생교육법」

- 제14조(시·군·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) ① 시·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·군·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(이하 "시·군·구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시·군·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시·군·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, 위원은 시·군·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, 평생교육 전문가, 장애 인 평생교육 관계자,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 이 위촉한다.
 - ④ 시·군·구협의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16조(경비보조 및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.
 - 1.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운영
 - 2.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
 - 3.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
 - 4.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
- 제21조(시・군・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・운영 등) ① 시・도교육감은 관할

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·운영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있다.
-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- 1.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운영
 - 1의2.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· 운영
 - 2. 평생교육 상담
 - 3.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 · 훈련
 - 4.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
 - 5. 제21조의3에 따른 읍 면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
 - 6.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26조(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)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.
 - ②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3. 23.>
 - ③ 제20조에 따른 시·도평생교육진흥원,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시·군·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5. 29.>
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규정

- ○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제2호
 -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

2. 미첨부 사유

-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 용어 정의 및 경비지원 등 관련 근거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임
-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

3. 작성자

○ 소 속: 혁신교육과

○ 직 급: 지방행정주사

○ 성 명: 김정희

○ 연락처: (052)290-3292